

재산등록(신고)기간 연장 신청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즉시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 (등록 의무자) | 성명 | 생년월일 | 전화번호 (휴대전화) () |
| | 소속 | 직위 | 직급 등 |
| | 주소 | | |
| 신고서 | 공개 구분 | [] 공개자 / [] 비공개자 | |
| | 등록기준일 | | |
| | 등록의무 기한 | 까지 | |
| 연장신청 기간 | | | |
| 연장신청 사유 | | | |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등록기관의 장 귀하

유의사항

1.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적으십시오.
2. 등록의무기한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.
3. 공개자는 최대 20일, 비공개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
작성방법

<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'직급 등' 란 작성방법>

1.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·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[예: 고위공무원 가등급]
2.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(외무공무원의 경우)을 적으십시오. [예: 서기관, 8등급]

업무 처리절차

